

우송대학교 대학원 공개강좌운영규정

제 정	2002.	3.
개 정	2003.	3.
개 정	2007.	3.
개 정	2008.	3.
개 정	2012.	3.
개 정	2015.	3.
개 정	2016.	2.
개 정	2016.	11.

제 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.)인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철도융합대학원,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, 보건복지대학원, 경영대학원, Culture-Technology융합대학원(이하“특수대학원”이라 한다.)학칙 제26조에 의하여 설치된 공개강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2012.3.1.)(개정2015.02.16.)(개정2016.02.18.)(개정2016.11.16.)

제2조 (개설강좌) 대학원에는 학과별로 특성에 맞는 공개강좌(이하 “과정”이라 한다)를 개설할 수 있다.

제3조 (운영) 이 과정은 대학원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과는 별도로 단기 공개강좌로서 운영한다.

제 2장 운영위원회

제4조 (운영위원회)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대학원 학칙 제33조에 따라 대학원위원회로 구성한다.

제5조 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.의결한다.

1. 수강생과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
2. 과정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제 규칙 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6조 (의결방법 및 임기) 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임기는 대학원 학칙 제33조 및 제34조에 준한다.

제 3장 모집과 전형방법

제7조 (입학정원) 이 과정의 입학정원은 공개과정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한다.

제8조 (입학자격)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수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.

제9조 (구비서류)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지원자의 현직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전형방법)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에 의하되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.

제 4장 수강기간 및 등록

제11조 (수강기간) 수강기간은 2학기 또는 1학기로 하되, 경우에 따라서 단축할수 있다.

제12조 (개강) 전기는 3월, 후기는 9월에 개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13조 (수강등록) 수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일단 납입한 수강료는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 (출석 및 수료증서 수여)

①수강생은 총 수업일수의 2/3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.

②수강중에는 사례연구 발표 또는 별도의 평가 등을 실시한다. 다만, 단기과정의 경우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.

제 5장 표 창

제15조 (표창) 재학기간중 학업이 뛰어나거나 이 과정 또는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.

제 6장 보 칙

제16조 (준용사항) 이 규정에서 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원 학칙 및 학부 학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